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II)

최 상 수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2. 물건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분류할 수 있다

가. 업무추진비 설정내용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로써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직급보조비는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

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써 실·과·소 운영에 따른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서 대민활동비와 감사·세무·예산·법무활동비는 병급지급이 가능하다.

1) 업무추진비의 개념·집행방법

【질 의】

- 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용어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열거된 용어인 지 여부
-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이 순소모성경비로 집행한 바 있는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중복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기관운영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한 근거
- ④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중복하여 용어를 운영하게 된 사유

회 신

○ 먼저 회신에 앞서

-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대별되고 있으며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단위로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보조기관·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직위별로 편성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경비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와 예산의 낭비억제를 위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기준액(상한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동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①에 대하여

- 상기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98년까지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질의②에 대하여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목적이 자치단체의 행사·시책·대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과 조직운영 및 유관기관의 협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 설령 두 가지 업무추진비가 일부 접대비 등 소모성경비로 집행되었다 하여도 경비집행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가 아닌 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경비지출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중으로 중복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 질의③에 대하여

-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통합한 것은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로 통합하여 제시한 기준액의 경비를 별도로 구분 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번잡함을 개선하고 경비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와 같은 사항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질의④에 대하여

-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온 것은 종전의 경우('93년이전) 특수활동비는 정보비, 일반업무추진비는 관공비라는 명칭으로 구분 운영되어 온 데 따른 것으로
- 두 가지 경비의 경우 공통적으로 회계의 집행절차에 의거 지출하되 특수활동비의 경우 불우시설 위로·격려 등 용도에 따라 현금지출이 가능한 점이 일반업무추진비와 다른 점입니다만
- '99년도부터 특수활동비를 일반업무추진비로 통합함에 따라 '98년까지는 특수활동비의 50% 수준이었으나 통합이후 '99년부터는 현금집행가능비율을 30%로 낮추어 운영하도록 개선하였음.(재정 13310-1127, 2000. 9. 14)

② 직급보조비 지급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와 통상 관련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 제1항에 의거 외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직급보조비를 병급 지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해외연수 및 외국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직무수행의 연속으로 보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③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관련

【질 의】

- 2개소의 공영빛물펌프장에서 겸임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담당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월정액 7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98 예산 편성기본지침상의 월정액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공무원 개인에게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추진을 위한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과 금액은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급할 수 없음(재경 13310-45, '98. 1. 19)

【질 의】

- 1과 1계에서 담당하던 투자심사·중기재정계획·지방채·기금관리업무를 2과2계로 조직이 개편되었을 때 시·도의 지급대상과 같이 2과2계 직원을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으로 인정하여 과장 및 계직원에게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법무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 연도중 기구·직제의 변경으로 소속과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업무와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함(재경 13310-206, '97. 3. 21)

【질 의】

- '98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시·도의 예산 및 투자관리(심사) 업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지급대상 범위를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단위』로 정하고 있는바
- 『예산담당관실』에서 관장하였던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업무를 조직개편으로 기획관실의 투자심사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경우 기획관실 공무원중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투자심사계)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범위를 『실과단위』로 정한 것은 경비지급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간 경비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예산 및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예산담당관실 등)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일부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대상 범위를 『실과단위』로 정한 것은 경비지급범위를 최소화하고 동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간 경비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예산 및 투자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예산담당관실 등)가 아닌 다른 실과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일부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에 예산담당실과에 소속되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받아 오다가 직제의 변경으로 일부계가 다른 실과에 소속되어 동일업무를 수행할 경우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의 계속적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재경 13310-593, '98. 9. 26)

【질 의】

- 『재산관리계』 소속 직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재산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의 근무직원에게 지급토록 한 것이므로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 니함(재경 13310-742, '98. 11. 6)

【질 의】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세무부서에 대하여는 대민활동비 외 별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세외수입인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도 세무부서 담당공무원과 같이 별도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P61)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질 의】

- 6급이 5급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경우, 직책급여추진비는 5급과장이 받는 금액으로 지급하였고 대민업무활동비는 미지급하였음.
- 직무대리이므로 직책급여추진비는 5급기준 지급, 대민업무 활동비는 6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6급으로 5급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질 의】

- 출산휴가중인자의 대민활동비(6급이하, 월정액 30,000원) 지급 가능 여부
 - 세출집행지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월정직책급 집행지침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월정직책급은 1개월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등에게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명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1개월이상 직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므로 출산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없음.

【질 의】

-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대민활동비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 등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 휴직(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 직위해제, 정직 등으로 1개월이상 직무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으나 공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는 지급대상임

【질 의】

- 대민활동비의 지급범위가 2/4분기부터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정수장감시 청원경찰의 경우 지급여부
- 우선 정수장 감시 청원경찰의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읍면으로 재배정되어 지급, 청원경찰의 소속은 읍면에 정원이 있어 읍면수당 및 민원수당등은 지급받지 않는 실정이나 2000년 2/4분기부터 대민활동비 지급범위를 청원경찰을 포함하도록 되어 읍면소속 청원경찰도 지급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설) 지급범위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원경찰이 읍면동의 소속일 경우 지급 불가

(을설) 지급범위가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은 기존의 지급자이고 청원경찰은 추가된 것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더라도 당연히 지급 가능

회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에 근무하는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과 전임계약직 6급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지급 대상이며
- 읍면소속으로 근무하는 청원경찰(읍면수당 및 민원수당 미지급 경우)도 지급 대상임.

【질 의】

- 시군구 근무 6급이하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월중에 들어가거나 휴가가 끝나 월중에 출근하는 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해당 월의 30,000원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할계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월중에 출산휴가로 출근하지 않거나 출산휴가가 끝나 월중에 출근하게되는 경우 대민활동비 월정액 30,000원을 전액 지급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실근무일수(공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국가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④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관련

【질 의】

- 시청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는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회 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기관장 또는 보조기관을 대상으로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원칙상 직제에 의한 직위가 있는 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직위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여건을 고려, 급여를 지급한 ○ ○ 시청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13310-979, 2000. 8. 7)

【질 의】

- 공로연수과건자(전 부구청장·국장)에 대한 직책급여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연봉적용대상 제외) 지급가능여부

회 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공로연수과건자에 대해서는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임
-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그 집행방법은 국가의 '99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바
 - 공로연수과건자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의 지급제외대상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지·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급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재경 13310-1082, '99. 10. 15)

【질 의】

- △ △ 시 직제규칙상의 고충민원분석관(4급상당 별정직), 정책보좌관(4급일반직) 등의 보좌기관에 대하여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4급 보조기관의 경우 월 350천원(연간 4,200천원) 지급함
- 또한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지급대상으로 하며 직제상 보조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

【질 의】

- 시립도서관 관장은 6급 기관장으로 월정직책급여무추진비는 100,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은 대민업무활동비 지급부서이기에 매월30,000원씩 대민업무활동비도 지급하고있음
- 지침상의 대민활동비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포함되어져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3목에서 직급보조비만 병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대민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볼 수 있는지
 - 병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대민활동비는 시·도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 6급 기관장으로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도 지급이 가능함

【질 의】

- 행정자치부 발행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 59~60p상 직책급여무추진비의 항목내용중 6급 보조기간 동사무장(서울시는 동의계장)이라고 되어 있음
- △△시의 동사무소 업무체계는 이전같이 보조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위만 사무장에서 총괄담당으로 변경되었음

- 이 경우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 직책급여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바
- 동의 [총괄담당]은 2000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60p)중 6급 보조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책급여무추진비의 지급대상이 아님

【질 의】

- ① 국가기관 보조기관의 경우 課長과 科長 구분없이(연구관 포함) 직책급여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 ②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경우 보조기관인 課長과 科長 보직을 받아 부서운영비는 동일하게 집행하는데, 연구관 과장(科長)은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안되는지 여부
- ③ 課長과 科長(연구기관 과장)의 직책급여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차별성 여부

회신

- 질의 ①②③에 대하여
 -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직책급여무추진비는 하부조직이 있는 기관장과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상 보조기관 課長이상을 대상으로 직위별 당해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급하는 것인 바
 - 연구기관의 科長(5급상당)은 직책급여무추진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재정 13310-403, 2000. 3. 29)

나. 복리후생비 설정내용

복리후생비는 국가와 동일하게 운영하는 사항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

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의 경비이외에 별도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없다.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정무직공무원(1급상당이하 연봉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적용되는 경비로, 연가보상비 적용기준이 되는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내용에 따라 정무직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재정 13310-1054, 2000. 8. 28)

【질 의】

- ①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파견명령을 받아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도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지급대상자인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은

회 신

- ①항 질의에 대하여
 - 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거 국내외훈련기관등에 장기(1개월이상) 파견된 공무원』에 해당됨. 단,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함
- ②항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frac{12\text{월}-\text{제외기간(월)}}{12\text{월}}$
 - 1회 교육이 1개월 이상일 경우에 제외기간에 포함(참고 : 세출예산집행지침상의 연가보상비 내용 참조)(재정경제원 예기 4112-9, '98. 2. 3)

【질 의】

-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에 있어 연도중 지방자치단체에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98. 12. 26일자 ○ 구→○ 구)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에 대한 질의

회 신

- '98 세출예산집행지침상 연가보상비 지급기관은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봉급지급 기관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 '98. 12. 26일자 인사발령인 경우 현지근무(전입지)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이 타당함(재경 13310-123, '99. 2. 5)

【질 의】

- △△도(○○군)에서 '98. 9. 30일자로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현년도 예산에서 그리고 채권소멸시효 전까지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 ○○군의 경우 퇴직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나 군의 실무착오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 지방재정법 제58조(과년도지출)의 규정에 의하여 현년도예산에 편성하여 퇴직 유무에 상관없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내 지급해야 한다는 설

(을설)

-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98~'99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구분과 설정(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이 복리후생비로 구분되고, 지급대상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설

회신

- 귀 기관의 검토의견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경 13310-269, '99 3. 22)

【질 의】

- 지방행정 구조개편으로 통·폐합된 기구의 잉여인력을 대기발령 조치한바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 명확치 않아 일부 언론에서 대기발령된 공무원들의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 지급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바,
-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만 지급제외 대상자로 되어있으나
- 대기중인 자는 사실상 직무에 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은 동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되므로 동지침의 지급제외대상자 기준을 변경하여 주시기를 건의

회신

-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비목으로서 국가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준을 지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지급기준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 국가의 운영현황을 보면 복리후생비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전체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으며, 연가보상비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경 13310-670, '98. 10. 10)

【질 의】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휴직한 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느냐,
- '99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구분과설정 지침 p64 4. 명절휴가비 나. 지급대상일 및 지급액의 “단, 당해월중 승진·강임---하고,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감액되기전의 봉급액으로 함”의 지침내용을 보면 휴직자도 지급한다고 해석이 되는바

-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및 2)번 내용의 명확한 해석은

회신

- 명절휴가비는 지급대상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중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명절휴가비가 지급대상일 현재 월봉급액의 50%를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을 지급하도록 한 것임

【질 의】

- 가계지원비가 4,5,8,10,11월로 지급일이 변경되었는데, 무조건 그 달 보수액의 50%인지, 아니면, 합산하는 달이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회신

- 가계지원비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청원경찰중 지급월 현재 재직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 지급방법은 지급월(4,5,8,10,11월)의 월봉급액(지급월 현재의 실 지급한(할) 봉급액을 의미함)에 50%를 곱하여 계산하며,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지금까지 인건비와 물건비만 언급하였으나 다음에는 물건비의 미진한 부분과 이진 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예비비 기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다. ☺